

종합감사

- 2026년 제2차 공공기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종합감사 -
감 사 결 과 보 고 서

2026. 8.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 사 2 과]

|| 목 차 ||

I . 감사실시 개요	1
II .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 감사결과	3
1. 감사결과 총괄	3
2. 종합의견	3
3. 적극행정 면책처리 현황	4
4. 주요 지적사항	4
5. 제보사항 처리 현황	13
6. 제도개선	13

【별 첨】 처분요구서

I 감사실시 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경기도 감사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코리아경기도식회사에 대하여 「2026년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종합감사 추진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직전 종합감사(21년도) 이후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 도정 위험요인 사전 예방 및 최소화로 도정에 대한 도민 신뢰 제고

감사대상 및 중점사항

- (감사대상)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감사범위) 이전 종합감사 자료작성 기간 이후('21. 9. 1.)부터 '26. 3. 31.까지 업무 처리 전반
- (중점사항)
 - 기관 주요사업 추진 적정성,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실태
 -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 추진 실태
 - 직원(공무직, 비정규직 포함) 승진·인사 분야
 - 직원 복무 및 근태 관리(수당, 여비, 출장, 관용차량 등)
 -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수당 지급의 적정성
 - 청탁금지, 이해충돌 방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교육 및 처리 적정성 등
 - 공개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기타 감사제보 사항 등

감사실시

- (감 사 반) 감사2과장(총괄) 등 1반 7명 (도민감사관 2명 별도)
- (사전준비) 감사계획 통보(2026. 3. 17.), 감사자료 제출(2026. 4. 10.)
- (감사기간) 2026. 5. 20. ~ 5. 29.(7일) ※ 사전조사: 5. 13. ~ 5. 19.(5일)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기본현황

- (설립목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해외 판로 등 유통환경에 맞춘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설립일) 2016년 11월 9일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기관장) 공석

조직 및 인력

(2026. 3. 31. 현재)

- (조직) 2본부 6팀
- (인력) 정원 52명 (일반 52명, 비정규직 0명) / 현원 53명 (일반 43, 계약직 10)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31,773	31,100	27,734	34,104	67,899

주요사업 현황

- 중소기업의 국내·외 직접매출 증대 지원
- 공공디지털SOC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매출 증대 및 가치 소비문화 확산
-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포용적 플랫폼 운영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행정상 17건 (기관경고2, 주의 12, 개선 1, 통보 10)
- 신분상 6명 (훈계 3, 주의 3)

(단위: 건, 명, 천원)

행 정 상							신 분 상			재 정 상			
구분	계	주의	시정	개선	통보	기관경고	계	징계	훈계등	계	회수	부과	기타
본처분	17	12	-	1	10	2	6	-	6	0	-	-	-

※ 행정상 처분의 경우 중복 처분 존재(주의·통보 동시 처분 등)

2. 종합 의견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이하 “코리아주식회사”라 한다)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 이번 종합감사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종합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승진 등 인사 분야, 예산 및 회계,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업무 전반, 직원 복무 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종합감사 결과, 「코리아주식회사 계약사무 운영규칙」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이 아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경고를 요구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함
- 또한 수출업체의 물류비 지원대상 및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기업을 부적절하게 선정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부적절하게 한 관계자에게 훈계처분을 요구하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음

- 이 외에도 외부 강의 신고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관리 소홀, 의원면직 처리 절차 미준수,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소홀, 위원회 운영 업무처리 소홀 등 단순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규정 미준수 사항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상위 법령에 맞춰 제안서평가위원회 최소 인원수를 명시하는 등 내부규정을 정비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음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적극행정 면책 처리 현황

- 해당없음

4. 주요 지적사항

1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 부적정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기업을 심사위원(7인) 합계 평균 평가점수 7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는 공고문 내용과 다르게 각 채널사*별 심사위원 1인이 자신이 속한 채널에 방송할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공고문대로 선정하였다면 70점 이상으로 합격할 업체(○개사)가 탈락하고 70점 미만으로 불합격 업체(○개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됨

* ◇◇홈쇼핑, ☆☆홈쇼핑, □□□□쇼핑, ★★스토아, △△홈쇼핑, ◆◆커머스, ○○○○비전

- 또한, 수출 업체의 해상운임 물류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수출 매칭)을 추진하면서, 지원기업 50개사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위원(3인)들의 평가점수를 실제와 다르게 계산하여 제대로 계산했다면 합격하는 업체(○개사)가 지원대상에서 탈락(예비합격)하고, 불합격 업체(○개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됨

* 동북아(중국 등) 최대 ○백만원 / 동남방(베트남 등) 최대 ○백만원 / 신시장(미국 등) 최대 ○○백만원

- 그리고 해당 사업에서 합격업체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락**(예비합격) 업체 중 ○개사를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특별한 기준 없이 수출계획서 등 먼저 서류제출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합격업체는 물론 예비업체 간의 순위도 다르게 후순위 업체를 우선 지원함

조치 사항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훈계 ○명, 주의 ○명**)
-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명 '훈계' 및 '주의' 요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로 위 감독자 ○명 '주의' 요구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업무를 철저히 (**주의**)

2 외부강의 신고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관리 소홀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미리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음
 - * 감사대상기간 중 ○○건 (20☆☆년 ○건, 20☆☆년 ○건, 20☆☆년 ○건, 20☆☆년 ○○건)
- 또한,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 승인 없이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수행
 - * 감사대상기간 중 ○명 (20☆☆년 ○명, 20☆☆년 ○명)
- 한편, 감사실은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시 외부강의등에 관한 내용은 점검을 누락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조치 사항



- 앞으로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이행실태 점검 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주의**)

3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

- 가본부는 20☆☆. 12. 31.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 20☆☆. 1. 1. 효력이 발생하는데도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 1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 대상자를 추천*했고, 대리급 승진 대상자(주임 → 대리)에 포함된 ○명은 20☆☆. 1. 1. 입사자로 최초 입사 시 제출하거나 인정된 경력이 없어 인사위원회 개최일이나 명부 작성 기준일 상 승

진소요 최저기간인 3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대상자로 포함하여 명부를 작성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대리 승진 대상자로 추천되도록 함

* ◆◆◆◆실-4417(20☆☆. 12. 16.)(20☆☆년 직원 승진자 추천계획(안)):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인원의 3배수 이내를 추천한 후, 대표이사가 승진자 최종 결정

○ 가본부는 20☆☆. 4. 15. 인사규정 개정된 이후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인사평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반기 인사평가를 하였고, 20☆☆. 12. 31.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할 때 20☆☆년 인사평가는 상·하반기를 구분하여 점수를 반영했으므로 20☆☆년 인사평가 또한 상·하반기를 구분하여 점수를 반영해야 하는데도, 이를 합산해 점수를 반영함

- 20☆☆년 상·하반기를 구분한 인사평가점수를 반영해 명부를 재산정한 결과 차장 승진 대상자 ○명, 과장 승진 대상자 ○명, 대리 승진 대상자 ○명의 명부 순위가 변동하였고, 특히 과장 승진 대상자의 경우 20☆☆. 12. 19. 인사위원회에서 명부 서열 1~3순위인 ○명이 추천*된 바 적정하게 산정된 명부가 인사위원회에 제출되었다면 다른 자가 추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되게 함

* 3위와 4위가 변동됨

조치
사항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훈계 ○명)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승진 대상자를 추천 받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인사평가점수를 반영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명은 '훈계' 요구
- 승진과 관련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해 작성하지 않도록 조치 (주의)
- 업무 담당자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 방안 강구 (통보)

4 직원 인사평가 업무 부적정

○ 가본부는 20☆☆년 하반기 인사평가의 경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사평가 대상자를 확정해야 하는데도 기준일 이전인 20☆☆. 12. 16. 인사평가 결과를 최종확정하여 평가대상자가 변동될 시 이를 반영할

수 없도록 함

- 그리고 가본부는 20☆☆년 상·하반기 인사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평가대상별 등급 배분율을 정하였는데도, 인사평가를 진행하면서 부서원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과 같이 등급 배분율에 맞추어 인원을 배분하였고, 관리자급(본부장, 실장)의 경우에는 계획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등급을 상향해 임의로 배분함
- 또한 가본부는 ○차 평가자의 경우 30% 한도로 비율만큼 인사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부서원에 대하여 인사평가 등급을 조정하면서 당초에 대표이사 결재로 정한 것과 달리 한도를 초과해 조정함

조치
사항



- 인사평가 기준일 전에 인사평가 결과를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해진 바와 다르게 임의로 등급을 배분하거나 조정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인사평가 등급 배분율, 조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측이 가능한 인사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치 방안 마련 (통보)

5 20☆☆년(☆☆년 실적)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업무처리 소홀

- 가본부는 인사평가 점수는 당해 직급에서 산출해야 하는데도 20☆☆. 8. 8. 승진한 2명의 직원의 경우 20☆☆년 하반기는 승진한 직급에 대한 인사평가 점수를, 20☆☆년 상반기는 승진 이전의 직급에 대한 인사평가 점수를 반영해 인사평가점수를 산출한 후, 성과급 지급을 위한 등급을 결정함
- 그리고 가본부는 20☆☆년 7월 이후에 의원면직한 ○명의 경우 20☆☆년 상반기 인사평가 대상이었는데도 인사평가 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부적정하게 인사평가를 하지 않아 ◎등급을 부여함
- 또한 개인별 또는 부서 단위 근무성적·업무 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정해야 하는데도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수립한 후 성과급을 지급함

조치
사항



- 관련 지침에 따라 개인별 또는 부서 단위 근무성적·업무 성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규정으로 만들도록 조치 (통보)

6 의원면직 처리 절차 미준수 및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미실시

- 가본부는 퇴직 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대부분 퇴직 직전에 의원면직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했으며 자체 감사부서로 통보되거나 내사 중인 비위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의원면직 처리함
- 그리고 가본부는 승진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인사규정 등이 아닌 대표이사 결재를 받은 비공개 문서에 절차를 정하였고, 최초 입사 시 인정된 경력은 임용된 직급의 승진소요 최저기간에 반영하는 사항 등을 제·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승진 등 인사를 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채, 인사 업무를 수행함

조치 사항

-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 기관과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자체 감사부서로 통보된 비위 사실 등을 확인하는 업무 철저 (주의)
- 승진·전보 등 인사를 하기 전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승진과 관련된 세부기준 등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보)

7 조직관리 규정과 다른 부서 명칭 사용

- 주식회사는 예산서, 도의회 업무보고서 등에는 조직관리 규정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팀, ▽▽▽▽팀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문서를 생산하거나 접수할 때, 문서를 대외로 발송할 때는 조직관리 규정 등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실, ▽▽▽▽실 등의 명칭을 사용함

조치 사항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정원 및 조직관리 규정」에서 정한 부서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정원 및 조직관리 규정」을 실제 사용하는 부서의 명칭으로 개정하는 등의 조치 방안 마련 (통보)

8 용역 분할 발주 및 1인 건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나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53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한 용역에 해당하는데도 특정 업체와 협약 후 가본부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의뢰하였고, 가본부는 수의계약 가능 여부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홈쇼핑(주) 등 ○○개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5.-라.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음
- 나본부는 20☆☆년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의 당초 사업계획 시 단일사업으로 검토하였으나 임의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건으로 해당 사업을 분할하여 나본부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의뢰하였고, 가본부는 분할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쇼핑과 ○○건(◆◆◆,◆◆◆천원), □□홈쇼핑과 ○○건(◆◆◆,◆◆◆천원)을 분할하여 각각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조치 사항

- 행정상 조치 (기관경고)
-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및 계약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행 및 내부 규정 정비 등 관리 방안을 마련 (통보)

9 건설공사 하자검사 등 미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도 발급되지 않음

조치 사항

-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철저히 실시 (주의)

10 부정당업제 제재 및 계약보증금 환수 미이행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계약보증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계약부서는 “20☆☆ 디지털 SOC 구축사업 가맹점 영업 및 관리 용역” 계약 해지에 대해 계약업체인 (주)△△△△△△△△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음

※ 계약보증금: △△,△△△천원, 이행률 27.8% → 보증금 환수 예정액: △△,△△△천원

조치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에 필요한 후속조치 이행 (통보)

11 채용 과정 및 임직원 친인척 공개 업무 소홀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III-4-바. 및 사.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지난 채용 공고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부존재

조치 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12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소홀

-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공용차량은 근무시간 내에 공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배차신청을 하여야 하고 차량을 사용한 후 사용이 완료되는 즉시 차고지에 반납하여야 함. 다만,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고지를 별도

로 지정하여 배차·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20☆☆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출장 전일 등에 공용차량을 집으로 가져간 후 다음날 또는 이틀 후 공용차량으로 출장지로 출근한 ○건을 확인하였고, 배차신청 없이 차량을 다수 운행한 점도 확인함

조치
사항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용차량 관리규칙」 등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1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말·심야 시간 사용, 주류판매 업종 이용, 50만원 이상 증빙 누락 및 분할 결제 건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 구비 여부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함
- 지급 권한이 없는 외부 관계자에게 명절선물 (○○회, ◇◇,◇◇◇,◇◇◇원), 화환·화분 및 축의·부의금품 등 (○○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함
- 또한,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위배(○○건, ◇,◇◇◇,◇◇◇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건, ◇◇,◇◇◇,◇◇◇원) 등 예산 집행기준을 미준수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조치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예산 집행기준을 미준수한 사실에 대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기관경고)
- 업무추진비의 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하고, 예산은 목적에 맞게 경비를 집행하고 당해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 실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 (통보)

14 법인카드 관리업무 소홀

- ◇◇◇◇실은 법인카드 발급 시 관련 규정에 없는 임의 서식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발급 상황을 각 부서 지출담당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함에도 20☆☆년 3월부터 누적된 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를 세입 조치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조치
사항

-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카드 관리 업무 철저 (주의)
-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을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등 법인카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통보)

15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등 지원기업 선정 부적정

- 20☆☆년 「중소기업 ◆◆◆ 지원-해외 오프라인(중국) 판로지원 기업」 모집공고에 따르면 범위반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도,
 - 법 위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지원기업 ○○개사를 선정하였고, 이 중 ○개 기업((주)△△△△△△)은 법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선정

* 「경기도 범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 20☆☆. 4. 9. 경기도에서 통보한 20☆☆년 중소기업 ◆◆◆ 지원사업 범위반 여부 조회결과에 노동분야(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통보(위반일자: 20☆☆. 7. 25.)

- 20☆☆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지원기업 선정을 두차례 진행하면서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합산을 실제와 다르게 계산*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함

* 선정된 기업간 점수와 순위의 변동은 있으나, 합격/불합격은 변동되지 않음

조치
사항

-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훈계 ○명)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기업 선정 시 「경기도 범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맞게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철저 (주의)
-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잘못 합산하지 않도록 검증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범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등에 따라 참여 자격 제한을 경기도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 (통보)

16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정 관리 및 구성 소홀

- 주식회사는 20☆☆. 9. 17. 경기도로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주의사항 통보*”를 받았는데도,
 - 20☆☆. 11. 4.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을 제정하면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였고, 감사일 현재(20☆☆. 5. 26.)까지 유지
- * 내부규정 등으로 평가위원 중 2/3 이상 출석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어 최소인원(7인) 미만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 미만으로 개최하여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경기도 회계과-30156(2021.9.15.)호]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감사 범위 기간 동안 제안서 평가 총 ○○건에 대하여 7인 미만(○명~○명)으로 평가를 실시함

조치
사항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따라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업무를 철저히
- 상위 법령을 위반하여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하지 않도록 평가위원회 최소 인원수를 명시하는 등 내부규정을 정비 (개선)

17 위원회 운영 업무처리 소홀

- 「위원회등 실비보상규칙」 실비보상기준에 따라 평가, 심사 등 회의 참석수당은 4시간 기준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기준과 다르게 지급(과소지급 ○건, 과다지급 ○건)
- 「위원회등 실비보상규칙」 제5조*에 따라 수당 지급은 참석시간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나, 참석시간 증빙자료 없이 지출(○건)하거나 최대 ○○일을 초과하여 지출(○○건)함
- * 2024. 12. 30. 개정으로 관련 조항 신설
- 「상법」 제391조의3, 「정관」 제47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나, ○○회에 걸쳐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않았고, 비치하지 않음

조치
사항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법」 및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정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위원회등 실비보상규칙」에 따라 이사회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철저히 (주의)

5. 제보사항 처리 현황

☐ 해당없음

6. 제도개선

☐ 해당없음